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1107호 2016. 8. 16(화)

### ◀ 입법예고 ▶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6-48호) ..... 2

### ◀ 고 시 ▶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제2016-108호) ..... 10

###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건설교통사업본부 제 2016 - 52호) ..... 12

회 람									
--------	--	--	--	--	--	--	--	--	--

##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 2016 - 48 호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포 항 시 장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제1호)

-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지원기준(안 제4조)

- 첫째자녀 출산장려금을 20만원으로 변경

##### 다. 지원대상의 확인 등(안 제5조)

- 출산장려금신청 서식에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추가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3. 관련법령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4. 조례안 : 붙임

### 5. 입법예고 : 2016년 8월 10일 ~ 2016년 8월 31일

### 6. 의견제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여성출산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 054)270-3032, fax 054)270-3020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출생아의 부”를 “시에 주민등록 한 출생아의 부”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고시”를 “신고 시”로, “출산장려금지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제6조제1호 단서 중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의”를 “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항”을 “제3호”로, “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여”를 “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식으로 기재하여야”를 “서식에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출시”를 각각 “전출 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10만원 1회 지원한다.

②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u>협약</u>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p> <p>5. "<u>협약업체</u>"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p> <p>6.·7.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계약</u>----- ----- ----- <u>&lt;삭 제&gt;</u> 6.·7.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u>출생아의 부</u>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2. (생 략)</p>	<p>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 ----- 1. ----- <u>시에 주</u> <u>민등록 한 출생아의 부</u>----- ----- ----- 2.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특별양육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p> <p>1. 첫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u>10</u>만원 1회 지원.</p>	<p>제4조(지원기준) ----- ----- ----- ----- ----- ----- ----- 1. -----<u>20</u> <u>만원</u>-----</p>

2. ~ 5. (생략)

6.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양육금 연1회 지원.

7. (생략)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 신고 읍·면·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 1부

2. (생략)

제6조(지원절차)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한다.

2.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  
-----  
---연 1회---

7.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  
신고 시 -----  
-----  
----- 출산장려금 지원 -----  
-----  
-----.

② -----  
-----  
-----  
-----.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  
-----  
-----.

1. -----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  
-----.

2. (현행과 같음)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 일자		
		년	월	일
보호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계	보험회사명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출생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이상(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H.P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 출생아건강보험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와의 관계 :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	민 원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기관장 확인	읍면동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고 시</b>
------------

포항시 고시 제 2016 - 108 호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8. 09.

## 포 항 시 장

###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내역

명 칭	읍면동	행정구역 면적(m <sup>2</sup> )	고시 면적(m <sup>2</sup> )	비 율	비 고
포 항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룡포읍	45,184,607.00	27,630,980.82	61.15%	
	연일읍	36,070,148.50	31,580,226.97	87.55%	
	오천읍	70,591,284.00	39,207,985.67	55.54%	
	대송면	32,603,517.50	17,667,259.15	54.19%	
	동해면	43,602,156.00	32,461,837.49	74.45%	
	장기면	100,428,307.00	65,244,556.19	64.97%	
	호미곶면	20,435,497.00	13,994,981.86	68.48%	
	홍해읍	106,602,299.10	86,408,984.05	81.06%	
	신광면	80,237,937.00	47,627,597.58	59.36%	
	청하면	78,197,313.00	48,653,747.94	62.22%	
	송라면	59,456,720.50	37,181,502.31	62.54%	
	기계면	91,912,222.00	61,176,807.94	66.56%	
	죽장면	235,740,324.00	101,020,912.64	42.85%	
	기북면	52,385,865.00	25,969,049.48	49.57%	
동지역	76,418,791.80	71,648,051.40	93.76%		
<b>포 항 시</b>		1,129,866,989.40	707,474,481.49	62.62%	

3.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054-270-3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 2016 - 52호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 08. 09.

## 포 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6. 8. 9 ~ 2016. 9. 9 (3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3. 폐차 예정일 : 2016. 09. 14 부터
4. 대 상 차 량 : 93주2667 외 8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팀 ☎(054)270-3643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 강제처리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6-135	93주2667	엑티언스포츠	오*석	630319-*****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2016-13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13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13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12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12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11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11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11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촉탁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보관장소
1	93주2667	액티언 스포츠	오*석	630319-***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118	압류1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과	환경과-19375	환경개선부담금체납	포항폐차장
						압류2	진천군청 환경과	환경과-20407	환경개선부담금 대체압류(07주7058)	포항폐차장
						압류3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과	환경과-14013 (2008.07.11)	환경개선부담금체납	포항폐차장
						압류4	진천군청 제우과 043-539-3265	제우과-20758	지방세 체납처분	포항폐차장
						압류5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과	환경과-13424 (2009.06.30)	환경개선부담금체납	포항폐차장
						압류6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장수팀-26	체납처분	포항폐차장
						압류7	진천군청 경제과 [300000원]	경제과 / 10007974	의무보험과태료체납	포항폐차장
						압류8	진천군청 경제과 [600000원]	경제과 / 10007973	의무보험과태료체납	포항폐차장
						압류9	진천군청 경제과 [600000원]	경제과 / 10007973	의무보험과태료체납	포항폐차장
						압류10	진천군청 경제과 [10000원]	경제과 / 11000062	의무보험과태료체납	포항폐차장
						압류11	진천군청 경제과 [5000원]	경제과 / 11000063	의무보험과태료체납	포항폐차장
						압류12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8600	주정차위반과태료 (2010-11-016615)	포항폐차장
						압류13	진천경찰서 (532-5000, 534-5001)	교통63310-000620	과태료 체납(151270100146151)	포항폐차장
						압류14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진천경찰서	진천군 환경위생과-2286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포항폐차장
						압류15	진천경찰서 (043-531-5353, 5352)	교통63310-000908	과태료 체납(151270110003475)	포항폐차장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촉탁기관	암류(지당)번호	암류(지당)내역	보관장소
1	93주2867	액티언 스포르츠	오*석	630319-****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118	암류16	진천군청	경제과/20111028004805	의무보험과태료제납	포항폐차장
						암류17	진천군청	경제과/20111028004904	의무보험과태료제납	포항폐차장
						암류18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236	환경개선부담금 제납암류	포항폐차장
						암류19	진천경찰서	201201512000686	과태료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1512701100894457)	포항폐차장
						암류20	진천경찰서	201201512001137	과태료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151270110104463)	포항폐차장
						암류21	진천경찰서	201201512002894	과태료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151270110143409)	포항폐차장
						암류22	진천경찰서	201201512003164	과태료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151270110171285)	포항폐차장
						암류23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8842	환경개선부담금 제납암류	포항폐차장
						암류24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143	환경개선부담금 제납암류	포항폐차장
						암류25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10032	주정차위반과태료 (2010-12-002335)	포항폐차장
						암류26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10032	주정차위반과태료 (2010-12-002338)	포항폐차장
						암류27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10032	주정차위반과태료 (2010-12-002334)	포항폐차장
						암류28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40477	환경개선부담금 제납암류	포항폐차장
						암류29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925	환경개선부담금 제납암류	포항폐차장
						암류30	진천경찰서	201401512000257	과태료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 (151270130250803)	포항폐차장
						암류31	진천군청	경제과	의무보험과태료제납 (20130314005244)	포항폐차장
						암류32	진천군청	경제과	의무보험과태료제납 (20130314005245)	포항폐차장

번호	자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압류(지당)번호	압류(지당)내역	모관장소
1	93주2667	액티언 스포츠	오*석	630319-***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118	압류33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1096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포항폐차장
						압류34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18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포항폐차장
						압류35	진천경찰서	201501512002485	과태료 채납지분에 의한 압류등록(151270140340394)	포항폐차장
						압류36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4629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포항폐차장
						압류37	북구청 건설교통과	북건교-17264	주정차위반 (20150617012853)	포항폐차장